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21일,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소위심사
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인철 의원)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

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 전담기관은 침해사고 발생 시 지정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대응 업무가 종료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한시 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등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